



제 418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원등의 결격 사유 요건 보완〉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93호,
제220249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부업자등¹⁾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중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임(대부업법 안 제5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안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u>유예기간 중에 있는</u> 자 5. ~ 7. (생략) ②·③ (생략)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u> <u>년이 지나지 아니한</u> ---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 ----- -----.

1)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설>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은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 함)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형의 선고와 관련한 결격사유의 경우 대부업법은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대부업법 등의 규정²⁾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경우에도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표 1]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형의 선고 관련 결격사유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러한 형의 선고 관련 결격사유 중 동일한 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보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형평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형법」 3)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5년 이하 기간(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나, 동일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이 경과하여야만 결격사유가 해소되게 됨.
- 형법에서 금고형을 벌금형보다 중한 것으로 규정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부업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사유 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보다 유리할 수 있음.

□ 한편, 대부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러한 내용이 없음.

-
- 3)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4. 범행후의 정황
 - 5)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3. 금고 / 6. 벌금

○ 참고로, 「형법」 6)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형의 경중을 결격요건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참고로, 형의 선고 관련 임원 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표 2] 형벌의 종류에 따른 임원등 자격 결격기간

법률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 집행유예	금고이상 선고유예	벌금형
대부업법 (§4)	현행	형집행 완료 후 5년	집행유예기간 종료시	선고유예기간 종료시	(채권추심규정) 형선고 후 5년
	개정안	상동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상동	상동
금융사 지배 구조법 (§5)	현행	상동	집행유예기간 종료시	-	(금융관계법령) 형집행완료 후 5년
	개정안	상동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선고유예기간 종료시	상동

6)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누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금융위설치법 (§8)	상동	집행유예기간 종료시	-	(금융관계법령) 형선고 후 5년
공인회계사법 (§4)	상동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선고유예기간 종료시	-
신용협동조합법 (§28)	형집행 완료 후 3년	집행유예기간 종료시	선고유예기간 종료시	(금융관계법령) 형집행완료 후 5년

문 의 처
02)6788-5106